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양식(1)

2019년 12월 15일 / 방콕지사

구 분(택1)	핵심내용
(통관)	<input type="checkbox"/> 태국 과일·채소류 수입 통관을 위한 GAP 인증서 공증 안내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대처방안
<p><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보건부 공지(No.386)에 의거 Anne 1(첨부) 목록에 해당되는 과일·채소류(48품목) 수출 시 태국 GMP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인증서 제출 항목 추가 ○ 기존에는 해당 인증서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은 인증서(GAP 등) 제출 필수 ○ 태국은 아포스티유(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미가입국으로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에 추가적으로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 확인을 한 번 더 받아야 함 ○ 태국 보건부 산하 식약처(FDA) 인증리스트에 한국 GAP인증을 등록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내 등록 완료 예상됨 ○ 인증 절차는 공증사무소를 통한 공증(1단계) -> 한국 외교부 영사인증(2단계) ->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인증(3단계) ○ 공증 서류는 GAP 인증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인증서 관련 내용은 19년 8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참조
<p><input type="checkbox"/> 시사점 및 대처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절차 기간은 공증부터 영사 확인까지 5~7일(근무일 기준) 정소 소요되니 해당 과일 및 채소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미리 준비해서 통관에 문제없게 해야 할 것

태국 과일·채소류 수입통관을 위한 GAP 인증서 공증 안내

1. 관련 배경

- ‘19.8.25부터 태국 보건부 공지(No.386)에 의거 Annex 1(첨부) 목록에 해당되는 과일·채소류(48품목) 수출 시 태국 GMP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인증서 제출 항목 추가
 - 기존에는 해당 인증서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관련 규정 강화되며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은 인증서(GAP 등) 제출 필수
 - 태국은 아포스티유(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미가입국으로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에 추가적으로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 확인을 한 번 더 받아야 함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 공증부터 영사확인까지 근무일 기준 5~7일 소요

- 현재, 태국 보건부 산하 식약처(FDA) 인증리스트에 한국 GAP인증을 등록하기 위해 관련 절차 진행중으로 연내 등록 완료 예상, **최종 공지 후 변경사항이 있을시 추가 안내 예정**

* 태국 FDA와 공증받은 GAP인증서(외교부 영사인증 등 제외)만으로 진행가능토록 협의 중으로, FDA 최종 공지 이후 업데이트 예정

2. 인증절차

- (1단계) 공증사무소를 통한 공증
 - GAP 인증서(영문)를 수출국(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업체를 통한 원본대조 공증 후 영사확인(한국 외교부, 주한 태국 대사관) 필수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공증서류 3부 필요
 -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또는 공증인)을 통해 공증부터 영사인증 까지 원스탑 대행 서비스 접수 가능(서비스 요금은 업체마다 상이)
 -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 > 전국 공증인 사무소 리스트 참조

* URL : http://www.koreanotary.or.kr/?page_id=2396

□ (2단계) 한국 외교부 영사인증

- 한국 외교센터(서울 양재동)에서 영사확인 신청서 및 공증 서류 제출
 -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영사민원실
 -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 오후 2시반 이전 접수 시 당일 발급 가능하나 대행사를 통할 경우 1박 2일 소요
- 제출서류
 - 본부영사확인 신청서(신청서 하단 신청업체 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전자수입인지

□ (3단계)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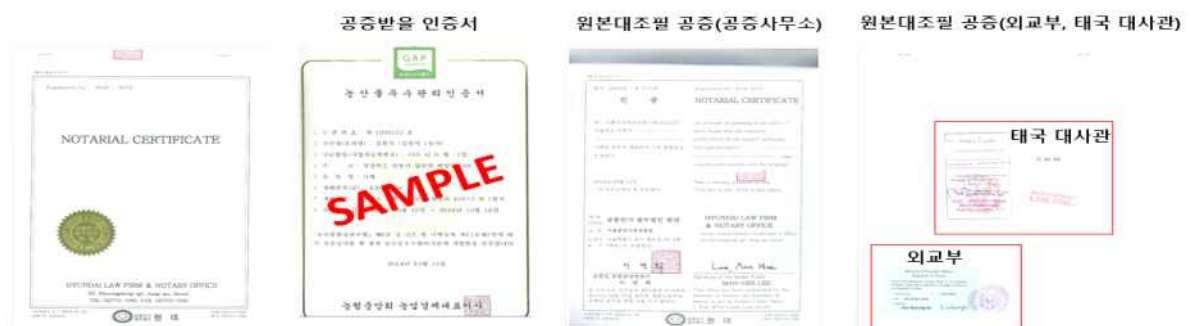
- 주한 태국대사관(서울 한남동)에서 대사관 영사인증을 위한 서류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주한 태국대사관
 -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2:00, 13:00~15:00 (태국대사관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영사인증 신청서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인증을 받은 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수수료 : 서류 한 부당 22,000원(현금만 가능)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3박 4일 소요(공휴일 제외)

3. 공증 서류 사용기한

□ GAP 인증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수출업체가 한국에서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은 인증서류를 바이어에게 전달, 수입통관 시 바이어가 FDA 담당자에게 인증 서류 보여주고 회수하여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4. 관련 사진



บัญชีหมายเลข ๑

แบบท้าย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 เลขที่ ๓๘๖ พ.ศ. ๒๕๖๐

เรื่อง กำหนดวิธีการผลิต เครื่องมือ เครื่องใช้ในการผลิตและการเก็บรักษาผัก หรือผลไม้สดบางชนิดและการแสดงฉลาก

ผลไม้สด ()	ชื่อวิทยาศาสตร์ ^๑
กล้วย (banana)	<i>Musa</i> spp.
เกาลัด (chestnuts)	<i>Castanea</i> spp.
แก้วมังกร (dragon fruit/pitaya)	<i>Hylocereus</i> spp.; <i>Hylocereus undatus</i> (Haw.) Britton & Rose; <i>Hylocereus megalanthus</i> (K. Schum. ex Vaupel) Ralf Bauer; <i>Hylocereus polyrhizus</i> (F.A.C. Weber) Britton & Rose; <i>Hylocereus ocamponis</i> (Salm-Dyck) Britton & Rose; <i>Hylocereus triangularis</i> (L.) Britton & Rose
แตงเทศ ได้แก่ แคนตาลูป (cantaloupe) และเมลอน (melon)	<i>Cucumis melo</i> L.
เงาะ (rambutan)	<i>Nephelium lappaceum</i> L.
ชมพู (java apple; wax jambu; wax apple; rose apple)	<i>Syzygium samarangense</i> (Blume) Merr. & L.M. Perry Syn. <i>Eugenia javanica</i> L.
แตงโม (watermelon)	<i>Citrullus lanatus</i> (Thunb.) Matsum. & Nakai Syn. <i>Citrullus vulgaris</i> Schrad.; <i>Colocynthis citrullus</i> (L.) Kuntze
ทับทิม (pomegranate)	<i>Punica granatum</i> L.
ฝรั่ง (guava)	<i>Psidium guajava</i> L.
พุทรา (jujube, Indian)	<i>Ziziphus mauritiana</i> L.; Syn. <i>Ziziphus jujuba</i> Mill.
มะม่วง (mango)	<i>Mangifera indica</i> L.
มะละกอ (papaya)	<i>Carica papaya</i> L.
ละมุด (sapodilla)	<i>Manilkara zapota</i> L.; Syn. <i>Manilkara achras</i> (Mill.) Fosberg; <i>Achras zapota</i> L.
ลำไย (longan)	<i>Dimocarpus longan</i> Lour.; Syn. <i>Nephelium longana</i> Cambess.; <i>Euphoria longana</i> Lam.
สตรอว์เบอร์รี่ (strawberries)	<i>Fragaria × ananassa</i> (Duchesne ex Weston) Duchesne ex Rozier
ส้มเปลือกอ่อน (mandarins)	<i>Citrus reticulata</i> Blanco และลูกผสม รวมทั้ง <i>Citrus nobilis</i> Lour.; <i>Citrus deliciosa</i> Ten.; <i>Citrus tangarina</i> Hort.; <i>Citrus mitis</i> Blanco Syn. <i>Citrus madurensis</i> Lour.; <i>Citrus unshiu</i> Marcow

^๑ อ้างอิง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สินค้าเกษตร มกษ.๙๐๔๕-๒๕๕๙ การจัดกลุ่มสินค้าเกษตร: พืช

ผลไม้สด ()

ส้มเปลือกไม่ล่อน (oranges) เช่น ส้มเกลี้ยง

สาละ (pear, oriental; Chinese pear; nashi pear; sand pear; snow pear)

องุ่น (grapes)

แอปเปิล (apple)

ผักสด ()

กระเทียม (garlic) กระเทียมโทน และกระเทียมจีน (onion, Chinese)

กะหล่ำดอก (cauliflower) รวมทั้ง กะหล่ำเจดีย์ (romanesco broccoli)

กะหล่ำปลี (cabbages) รวมทั้งกะหล่ำปลีไวย่น

กุยช่าย (chives, Chinese)

ข่า (galangal)

คะน้า (Chinese broccoli; Chinese kale)

แครอท (carrot)

ต้นหอม (spring onion) และต้นหอมญี่ปุ่น (onion, welsh; Japanese bunching onion; Chinese small onion; green onion)

ถั่วงอก (bean sprout)

ใบตำลึง (ivy gourd)

แตงกวา แตงร้าน (cucumber)

ถั้วฝักยาว (yard-long bean)

ถั้วลันเตา (garden pea)

บร็อกโคลี (broccoli) รวมทั้ง กะหล่ำดอก อิตาลีเลียน (broccoli, sprouting) แขนง

ชื่อวิทยาศาสตร์^๑

Citrus sinensis Osbeck, *Citrus aurantium* L. รวมทั้งลูกผสมและชนิด *Citrus myrtifolia* Raf.; *Citrus salicifolia* Raf.

Pyrus pyrifolia (Burm. f.) Nakai; *Pyrus lindleyi* Rehder; *Pyrus nivalis* Jacq.

Vitis vinifera L.

Malus domestica Borkh.

Allium sativum L. and *Allium chinense* G. Don; Syn. *Allium bakeri* Regel

Brassica oleracea var. *botrytis* L.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L.

Allium tuberosum Rottler ex Spreng.

Languas galanga (L.) Stunz; Syn. *Alpinia galanga* Sw.; *Languas officinarum* (Hance) Farwell; Syn. *Alpinia officinarum* Hance *Kaempferia galanga* L.

Brassica oleracea var. *alboglabra* (L.H. Bailey) Musil

Daucus carota L.

Allium cepa L., White Portugal and *Allium fistulosum* L.

Vigna radiata (L.) R. Wilczek

Cocoinia grandis (L.) Voigt

Cucumis sativus L.

Vigna unguiculata subsp. *sesquipedalis* (L.) Verdc.

Pisum sativum var. *sativum*

Brassica oleracea L. var. *italica* Plenck

^๑ อ้างอิง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สินค้าเกษตร มกษ.๙๐๔๕-๒๕๕๙ การจัดกลุ่มสินค้าเกษตร: พืช

ผักสด ()

กะเพรา โหระพา ใบแมงลัก (basil)

ใบบัวบก (pennywort)

ผักปวยเล้ง (spinach)

ผักกาดขาวปลี (Chinese cabbage)

ผักโขม (amaranth)

ผักบุ้ง (kangkung/water spinach)

พริกเผ็ด (chili) รวมทั้งพริกชี้ฟ้า พริกหนุ่ม

พริกหวาน (peppers, sweet /peppers, bell)
รวมทั้งปราปิกา (prapika)

ฟักทอง (pumpkins)

มะเขือเทศ (tomato)

มะเขือเปราะ (Thai eggplant)

มันฝรั่ง (potato)

หอมแดง (shallot)

เห็ด (mushrooms) ที่เพาะเลี้ยง เช่น

เห็ดโคนญี่ปุ่น, เห็ดโคนซิเมจิ, เห็ดหูหนูดำ,
เห็ดหลินจือ, เห็ดหอม, เห็ดฟาง, เห็ดหูหนู
ขาว เป็นต้น

ชื่อวิทยาศาสตร์^๑

Ocimum basilicum L.; *Ocimum x africanum*
Lour.; *Ocimum basilicum* L. *Ocimum x*
citrodorum Vis.; *Ocimum minimum* L.; *Ocimum*
americanum L.; *Ocimum gratissimum* L.;

Ocimum tenuiflorum L.

Centella asiatica (L.) Urb.

Spinacia oleracea L.

Brassica rapa L. subsp. *pekinensis* (Lour.)

Kitam. Syn. *Brassica pekinensis* (Lour.) Rupr.,

Brassica rapa var. *pekinensis* (Lour) Olsson

Amaranthus spp.

Ipomoea aquatica Forssk.

Capsicum annuum L. พันธุ์ที่เผ็ดร้อน

Capsicum annuum var. *grossum* (Willd.) Sendt.
and *Capsicum annuum* var. *longum* (DC.)
Sendt.

Cucurbita maxima Duchesne; *Cucurbita*

argyrosperma C. Huber; *Cucurbita*

moschata Duchesne; *Cucurbita pepo* L.

and *Cucurbita pepo* subsp. *pepo*

Lycopersicon esculentum Mill.

Syn. *Solanum lycopersicum* L.

Solanum undatum Lam.

Solanum tuberosum L.

Allium cepa L. var. *aggregatum* G.Don.

เช่น *Agaricus* spp. พันธุ์ที่เพาะปลูก; *Agrocybe*

aegerita; *Hypsizygus tessellates* (Bull.) Singer;

Auricularia auricular-judea (Bull.) Quél.;

Ganoderma lucidum (Curtis) P. Karst., and other

Ganoderma spp.; *Lentinula edodes* (Berk.)

Pegler; *Volvariella volvacea* (Bull.) Singer;

Tremella fuciformis Berk.; *Auricularia polytricha*

(Mont.) Sacc.; *Termitomyces* sp. เป็นต้น

^๑ อ้างอิง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สินค้าเกษตร มกษ.๙๐๔๕-๒๕๕๙ การจัดกลุ่มสินค้าเกษตร: พืช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양식

2019년 12월 15일 / 방콕지사

구 분(택1)	핵심내용
(라벨링)	<input type="checkbox"/> 건강기능 식품 라벨링 규정 수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대처방안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는 건강기능식품 라벨링 표기 규정(No.3)을 수정하여 재공지하였고 본 공지는 관보공지 다음날인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됨.○ 이전 건강기능식품 관련 보건부 공지 No293(2005)의 내용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보건부 공지 No.405(2019)의 건강기능 식품(No.3) 붙임표 식품 품목의 경고문을 변경.○ 모든 건강기능 식품 라벨링에 “경고” 문구와 기타 문구는 라벨 배경색과 대조되는 색으로 잘 보이게 표기해야 함.○ 보건부 공지 No.405(2019)의 건강기능 식품(No.3)은 관보 발표된 시점 다음 날인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되나 일부 식품의 경우 발표 이전에 이미 라벨링 작업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 2021년 5월 8일까지 예전 규정에 따라 계속 판매 할 수 있음.○ 한국어 번역본 참조
<input type="checkbox"/> 시사점 및 대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건강기능 식품의 경고 문구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게 표기하여 소비자들의 오해와 오용을 방지하고자 재수정된 것으로, 다시 참고하여 태국어 라벨링을 해야 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발표일자/출처 : 2019년 8월 14일 / 태국 보건부

보건부 공지 No.411(2019)
건강기능 식품(No.4)

태국 보건부는 건강기능식품 라벨링에 관한 공지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1979년에 제정된 식품 법률 제5조 및 제6조(3), (4), (5), (6), (10)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제1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2005년 12월 15일 보건부 공지 No.293(2005)의 내용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2019년 4월 25일 공지한 No.405(2019)의 건강기능 식품(No.3)의 붙임표 1번 경고문을 취소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건강기능식품 품목	경고문 및 기타 문구
1. 모든 건강기능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라는 문구는 1.5mm보다 크기가 커야 하며 사각형 글상자 안에 입력해야 한다. 글자 색은 글상자 배경색과 대조를 이뤄야 하며 글상자 틀의 색깔은 라벨 색깔과 대조를 이뤄야 한다. - “아기나 임산부는 섭취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보이는 글자 크기로 적어야 한다. - “5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있게 늘 적당한 양의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보이는 글자 크기로 적어야 한다. -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체로 사각형 글상자 안에 적어야 한다. 글자 색깔은 글상자 안의 배경색과 대조를 이뤄야 하며 글상자 틀의 색깔이 라벨 색깔과 대조를 이뤄야 한다.

제2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2005년 12월 15일 보건부 공지 No.293(2005)의 건강기능 식품(No.3)의 제12조를 취소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제12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라벨도 반드시 태국어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 제품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가 가능하지만 최소한 식품명, 식약청 등록번호, 생산자나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의 용량은 표시해야 한다.”

제3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2019년 4월 25일 보건부 공지 No.405(2019)의 제3조를 취소하고 아래의 내용을 대신 적용한다.

“제3조 본 공지는 관보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날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공지에 의해 수정된 2005년 12월 15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보건부 공지 No.293(2005)의 내용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2019년 4월 25일 공지한 No.405(2019)의 건강기능 식품

(No.3)의 붙임표 2.16번, 2.17번, 2.19번에 해당하는 경고문 및 기타문구를 라벨링에 표기해야 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이미 라벨링 작업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에는 본 공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더라도 2021년 5월 8일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본 공지는 관보 발표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발표 날짜 2019년 8월 14일
Mr. Anuthin Charnverakul
Minister of Public Health